

의안번호	2212055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2.
추계번호	25F42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철도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철도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404.5억원, 2028년 404.5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213.4억원(연평균 404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0.3억원(연평균 -0.1억원)
 - 국가철도공단의 국가 등에 귀속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76.6억원(연평균 -58.9억원)
 - 한국철도공사의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355.2억원(연평균 -118.4억원)
 - 도시철도공사의 부동산·철도차량 및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681.6억원(연평균 -227.2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합 계 (안 제63조)	-404.5	-404.5	-404.5	-1,213.4	-404.5
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제1항)	-0.1	-0.1	-0.1	-0.3	-0.1
국가철도공단의 국가 등에 귀속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제2항)	-58.9	-58.9	-58.9	-176.6	-58.9
한국철도공사의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제3항)	-118.4	-118.4	-118.4	-355.2	-118.4
도시철도공사의 부동산·철도차량 및 법인등기·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 제5항)	-227.2	-227.2	-227.2	-681.6	-227.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3조제1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	
2	안 제63조제2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철도공단의 국가 등에 귀속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	
3	안 제63조제3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철도공사의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	
4	안 제63조제5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 도시철도공사의 부동산·철도차량 및 법인등기·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3조제1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63조제2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63조제3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63조제5항 (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63조제1항)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0.2억원, 2023년 0.1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인 0.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63조제2항) 국가철도공단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1.7억원에서 2023년 4.4억원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.1억원
 - (재산세) 2021년 58.8억원에서 2023년 53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56.8억원
- (안 제63조제3항)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38.4억원에서 2023년 84.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3.9억원
 - (재산세) 2021년 63.8억원에서 2023년 60.9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64.4억원

- (안 제63조제5항)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 차량에 대한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12.2억원에서 2023년 14.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2.4억원
 - (등록면허세) 2021년 41억원에서 2023년 36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등록면허세 연평균 감면액: 45.8억원
 - (재산세) 2021년 167.8억원에서 2023년 159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69.1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25%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- (추계방법)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0.2억원, 2023년 0.1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인 0.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2]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0.18	0.05	0.10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(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」 자료 오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이용)

(2) 추계결과

-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0.1억원, 2028년 0.1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0.3억원(연평균 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용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제63조제1항)	-0.1	-0.1	-0.1	-0.3	-0.1

나. 국가철도공단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용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국가철도공단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- (추계방법) 국가철도공단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1년 1.7억원에서 2023년 4.4억원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.1억원
- (재산세) 2021년 58.8억원에서 2023년 53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56.8억원

[표 4] 국가철도공단 국가 등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
	(단위: 억원)		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60.6	58.3	57.7
- 취득세	1.7	0.2	4.4
- 재산세	58.8	58.1	53.3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(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」 자료 오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이용)

(2) 추계결과

- 국가철도공단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58.9억원, 2028년 58.9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76.6억원(연평균 5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8년

	(단위: 억원)				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용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제63조제1항)	-58.9	-58.9	-58.9	-176.6	-58.9
- 취득세	-2.1	-2.1	-2.1	-6.3	-2.1
- 재산세	-56.8	-56.8	-56.8	-170.3	-56.8

다.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63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 지방세 감면

○ 감면내용 및 감면율

-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: 취득세 25%, 재산세 50%
- 철도차량: 취득세 50% (단, 고속철도차량은 취득세 25%)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
□ (추계방법)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1년 38.4억원에서 2023년 84.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3.9억원
- (재산세) 2021년 63.8억원에서 2023년 60.9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64.4억원

[표 6]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02.1	108.0	145.0
- 취득세	38.4	39.3	84.1
- 재산세	63.8	68.7	60.9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(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」 자료 오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이용)

(2) 추계결과

□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

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18.4억원, 2028년 118.4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74.1억원(연평균 11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철도공사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제63조제3항)	-118.4	-118.4	-118.4	-355.1	-118.4
－ 취득세	-53.9	-53.9	-53.9	-161.8	-53.9
－ 재산세	-64.4	-64.4	-64.4	-193.3	-64.4

라. 도시철도공사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63조제5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 지방세 감면

○ 감면내용 및 감면율

- － 사업용 부동산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(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율 적용)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
- －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: 등록면허세 100%(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율 적용)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2028.12.31.

□ (추계방법)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1년 12.2억원에서 2023년 14.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2.4억원

- (등록면허세) 2021년 41억원에서 2023년 36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등록면허세 연평균 감면액: 45.8억원
- (재산세) 2021년 167.8억원에서 2023년 159.3억원으로 감소하여, 최근 3년간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69.1억원

[표 8]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22.0	249.2	210.4
- 취득세	12.2	10.1	14.8
- 등록면허세	42.0	59.1	36.3
- 재산세	167.8	180.0	159.3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(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」 자료 오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자료 이용)

(2) 추계결과

-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27.2억원, 2028년 227.2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681.7억원(연평균 227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도시철도공사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제63조제5항)	-227.2	-227.2	-227.2	-681.7	-227.2
- 취득세	-12.4	-12.4	-12.4	-37.1	-12.4
- 등록면허세	-45.8	-45.8	-45.8	-137.4	-45.8
- 재산세	-169.1	-169.1	-169.1	-507.2	-169.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